

의안번호	제 319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이옥규, 노금식, 최정훈,
김성대, 오영탁, 이태훈,
임영은

1. 개정 이유

-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3.2.)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에 따른 운임·숙박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부정하게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부정 수령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국내 출장 시 운임·숙박비 지급기준 개정 (안 별표)
 - 운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
 -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조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안 제5조 4호 및 8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충청북도 행정국 인사혁신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2023. 6. 2. ~ 2023. 6. 7.(5일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 근거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호 중 “동규정 별표 1에” 를 “별표에” 로, “별표 1에” 를 “별표에”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공무원란” 을 “해당 공무원란” 으로, “임기제 공무원” 을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 숙박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 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 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 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4조의2(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 근거</u> <u>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 금액 및 총 징수금액</u> <u>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u> <p><u>②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u>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u>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규정 <u>별표 1에</u>”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u>별표 1에</u>”로 본다.</p> <p>4의2. ~ 7. (생략)</p> <p>8. 영 <u>별표 1</u> 각 호의 <u>해당공무원란</u>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u>임기제공무원</u>”으로 한다</p>	<p><u>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별표에</u>“----- ----- ----- <u>별표에</u>”로 -----.</p> <p>4의2. ~ 7. (현행과 같음)</p> <p>8. ----- <u>해당 공무원란</u> ----- ----- ----- ----- ----- ----- ----- ----- <u>임기제공무원</u>-----</p>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3.2.)에 따라 국내출장에 따른 운임·숙박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부정하게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조항 신설(안제4조의2)
- 국내 출장 시 운임·숙박비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 운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
 -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조정
[현행] 제2호 실비 (서울 70천원/ 광역시 60천원 / 그 외 50천원
[개정] 제2호 실비 (서울 100천원/ 광역시 80천원 / 그 외 70천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5조)

2. 비용 발생 요인

- 숙박비 지급 금액 현실화에 따라 여비 지급 비용 증가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별표]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임 지급기준을 ‘정액’ 에서 ‘실비’ 로 변경 : 운임비용과 관련하여 정액과 실비 두 가지 모두 출장지까지의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며
 - 다만, 출장지까지의 대중교통편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연료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운임 비용 예산과 별 차이가 없음
-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인상 : 지급일 1,032박 / 지역구분

나. 추계 결과

- 숙박비 : 향후 5년간 337,875천원 세출 추계
 - 서 울 : 98박 × 100천원 = 9,800천원
 - 광 역 시 : 132박 × 80천원 = 10,560천원
 - 기 타 : 802박 × 70천원 = 56,140천원
- ※ 2호 기준 숙박 수 × 변경된 숙박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숙박비	31,875	76,500	76,500	76,500	76,500	337,875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로 충당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인사혁신과장 최병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세 입						
국 비						
도 비						
기타 (사업수입)						
세 출	31,875	76,500	76,500	76,500	76,500	337,875
국내여비	31,875	76,500	76,500	76,500	76,500	337,875
재원 조달	31,875	76,500	76,500	76,500	76,500	337,875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도 비					
자 체 수 입	소 계	31,875	76,500	76,500	76,500	337,875
	지방세	31,875	76,500	76,500	76,500	337,875
	세외수입					